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5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3.

발 의 자 : 우재준 · 박충권 · 김용태
고동진 · 배현진 · 김승수
이준석 · 이만희 · 한지아
김장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,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,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유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,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백화점 ·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앞서는 등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였고,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규모점포 ·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,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온라인 · 오프라인 유통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, 전통산업

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
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2 등).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7조의5제1항 중 “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(이하 “대규모점포등”이라 한다)와”를 “대규모점포와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)”을 “(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”을 “개설하려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대규모점포등의”를 “대규모점포의”로 한다.

제8조의3의 제목 “(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)”를 “(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60일 전까지,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”를 “60일 전까지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규모점포등을”을 “대규모점포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규모점포등의”를 “대규모점포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대규모점포등의”를 “대규모점포의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규모점포등의”를 “대규모점포의”로 한

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대규모점포등의”를 “대규모점포의”로, “대규모점포등개설자”를 “대규모점포개설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“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”를 “대규모점포개설자가”로 하며, 같은 호 후단 및 제2호 중 “대규모점포등의”를 각각 “대규모점포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”를 “대규모점포개설자의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)”을 “(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”을 “대규모점포개설자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대규모점포등을”을 “대규모점포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”을 “대규모점포에서는”으로,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”를 “대규모점포관리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“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”를 “대규모점포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”을 “대규모점포관리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”을 “대규모점포에서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2의 제목 “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”을 “(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대규모점포등과”를 “대규모점포와”로, “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에”를 “포함한다)에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

의 부분 단서 중 “대규모점포등으로서”를 “대규모점포로서”로, “대규모점포등에”를 “대규모점포에”로 한다.

제12조의3의 제목 “(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)”을 “(대규모점포의 관리비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”을 “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”을 “대규모점포관리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”을 “대규모점포관리자는”으로, “대규모점포등의”를 각각 “대규모점포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”를 “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”를 “대규모점포관리자가”로, “대규모점포등의”를 “대규모점포의”로 한다.

제12조의4제1항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”을 “대규모점포관리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”를 “대규모점포관리자가”로,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”를 “대규모점포관리자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”을 “대규모점포관리자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5의 제목 “(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)”를 “(대규모점포관리자의 회계감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”을 “대규모점포관리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”을 “대규모점포관리자는”으로, “대규모점포등의”를 “대

규모점포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”을 각각 “대규모점포관리자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6제1항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”를 “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의”로, “대규모점포등을”을 “대규모점포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”을 “대규모점포관리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규모점포등의”를 “대규모점포의”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)”를 “(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”를 “대규모점포개설자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”를 “대규모점포개설자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”을 “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”를 “대규모점포개설자가”로 한다.

제13조의2의 제목 “(대규모점포등의 휴업·폐업 신고)”를 “(대규모점포의 휴업·폐업 신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대규모점포등개설자”를 “대규모점포개설자”로, “대규모점포등을”을 “대규모점포를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1호 본문·제2호 본문 및 제3호 중 “대규모점포등과”를 각각 “대규모점포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대규모점포등”을 “대규모점포”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대규모점포등과”를 “대규모점포와”로 한다.

제44조제1호 중 “대규모점포등”을 “대규모점포”로 한다.

제44조의2의 제목 “(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·감독 등)”을 “(대규모점포의 관리현황 점검·감독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”를 “대규모점포관리자의”로,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”를 “대규모점포관리자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”를 “대규모점포관리자의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제2호 중 “대규모점포등”을 “대규모점포”로, “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”를 “대규모점포개설자의”로 한다.

제48조제1항 중 “대규모점포등의”를 “대규모점포의”로 한다.

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8조의2(규제의 존속기한) ① 제12조의2, 제13조의4 및 제52조제1항은 2028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② 제8조제3항·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3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49조제2항제1호 중 “대규모점포등을”을 “대규모점포를”로, “대규모점포등의”를 “대규모점포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”를 각각 “대규모점포개설자의”로 한다.

제52조제3항제1호 중 “대규모점포등의”를 “대규모점포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”를 “대규모점포개설자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4. “ <u>준대규모점포</u> 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<u>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</u> (「 <u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)가 <u>직영하는 점포</u> 나. 「 <u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<u>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</u> 가 <u>직영하는 점포</u> 다. <u>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5. ~ 16. (생 략) 제7조의5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) ① <u>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(이하 “대규모점포등”이라 한다)와</u>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(생 략) 제8조(<u>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</u>)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<u>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</u>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② (생 략) 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	5. ~ 16. (현행과 같음) 제7조의5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) ① <u>대규모점포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8조(<u>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</u>) ① -----<u>개설하려는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
--	---

대규모점포의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3(대규모 점포의 개설 계획
예고) -----
-----60일
전까지-----

-----.

제9조(허가등의 의제 등) ① -----
-----대규모 점포를-----

하 이 조에서 “허가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~ 17. (생략)

② 허가등의 의제(擬制)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0조(등록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
1. ~ 6. (생략)

-----.

1. ~ 17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대규모점포의-----

-----.

③ -----
-----대규모점포의-----

-----.

제10조(등록의 결격사유) -----

-----대규모점포의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특별
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
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
의 개설등록을 한 자(이하 “대
규모점포등개설자”라 한다)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
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
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
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
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
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
알려야 한다.

1.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
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
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.
이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
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
은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
2.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
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
하여 휴업한 경우

3. 4.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

제11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-----

-----대규모점포의-----

-----대규모
점포개설자-----

1. 대규모점포개설자-----

-----대규모점포의-----

2. 대규모점포의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(생략)

2.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제12조(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)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·2. (생략)

3.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대규모점포등 관리자”라 한다)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(생략)

2.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대규모점포개설자의-----

제12조(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) ① 대규모점포개설자는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대규모점포를-----

② -----대규모점포
에서는-----
-----대규모점포관리자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.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 (入店)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(이하 “입점상인”이라 한다) 3분의 2 이상이 동의(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하여 설립한 「민법」 또는 「상법」에 따른 법인

나. ~ 라. (생략)

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(區分所有)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「집합건물의 소유

가. -----대규모점포에-----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③ 대규모점포관리자는-----

④ -----대규모점포에서는-----

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⑤ (생략)

제12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(相生發展)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2. (생략)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2(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-----

-----대규모점포와-----

-----포함한다)에-----

-----대규모점포로서-----

-----대규모점포에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3(대규모점포등의 관리
비 등)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
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·관리
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
에게 청구·수령하고 그 금원
을 관리할 수 있다.

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 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.

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
모점포등의 유지·관리를 위하

제12조의3(대규모점포의 관리비 등) ①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
규모점포를-----

-----.

③ 대규모점포관리자는-----

⑤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
점포의-----

여 위탁관리,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5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의 4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4(회계서류의 작성·보관)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2조의3제4항 각 호의 금전을 입점상인에게 청구·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12

-----.

⑥ 대규모점포관리자가-----

-----대규모점포의-----

-----.
-----.

제12조의4(회계서류의 작성·보관) ① 대규모점포관리자는---

-----.

② 대규모점포관리자가-----

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.

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규정에서 열람과 복사를 위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제12조의5(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)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(이하 이 조에서 “감사인”이라 한다)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. 다만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

---대규모점포관리자의-----

-----.

③ 대규모점포관리자는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5(대규모점포관리자의 회계감사) ① 대규모점포관리자는-----

-----.

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·2. (생략)

제12조의6(관리규정)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

-----.

② 대규모점포관리자는-----

-----대규모점포의-----
-----.

③ 대규모점포관리자는-----

-----.

④ -----
-----대규모점포관리자는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6(관리규정) ①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의-----

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 상인이 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 받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
제13조(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

1.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
2.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
3.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

-----대규모점포를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대규모점포관리자는-----

-----.

④ -----
----대규모점포의-----

-----.

제13조(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) ① -----

대규모점포개설자의-----
-----.

1. 대규모점포개설자가-----

2.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를-----
-
3. -----대규모점포개설자가-----

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(생 략) 제13조의2(대규모점포등의 휴업 · 폐업 신고) <u>대규모점포등개 설자</u>(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 한 자를 포함한다)가 <u>대규모점 포등을</u>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 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. 제36조(유통분쟁조정위원회)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 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 ·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 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 다) 및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 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 다)·군·구에 각각 유통분쟁 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 다)를 둘 수 있다. 1. 등록된 <u>대규모점포등과</u>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·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	----- ② (현행과 같음) 제13조의2(대규모점포의 휴업· <u>폐업 신고</u>) <u>대규모점포개설자</u>- ----- -----<u>대규모점포를</u>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36조(유통분쟁조정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<u>대규모점포와</u>----- ----- -----.
---	--

쟁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. 2. 등록된 <u>대규모점포등</u>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. 3. 등록된 <u>대규모점포등</u>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. (생략) ② ~ ⑤ (생략)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<u>대규모점포등</u>,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⑦ (생략) 제37조(분쟁의 조정) ① 제36조에 따른 <u>대규모점포등</u>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② ~ ⑤ (생략) 제44조(청문) 산업통상자원부장	----- ----- -----. 2. -----<u>대규모점포와</u>----- ----- -----. -----. 3. -----<u>대규모점포와</u>-----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<u>대규모점포</u>----- ----- -----. ⑦ (현행과 같음) 제37조(분쟁의 조정) ① ----- -----<u>대규모점포와</u>----- ----- 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44조(청문) -----
---	--

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1.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
2. ~ 7. (생략)

제44조의2(대규모점포등의 관리 현황 점검·감독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·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관리

-----.

1. -----대규모 점포-----
2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44조의2(대규모점포의 관리현황 점검·감독 등) ① -----

-----대규모 점포관리자의-----

-----대규모점포관리자에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대규모점포관리자의-----

자의 현황, 업무의 집행 및 비용의 징수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제45조(통보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제8조·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<u>대규모점포등</u> 개설등록·취소 및 <u>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</u>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. 4. (생략) ② (생략) 제48조(수수료) ① 제8조에 따라 <u>대규모점포등의</u>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제48조의2(규제의 존속기한) 제2조제4호, 제8조제1항·제2항 중	----- ----- -----. 제45조(통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<u>대규모점포</u>----- -----<u>대규모점포개설자의</u>----- ----- 3.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48조(수수료) ① ----- <u>대규모점포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. 제48조의2(규제의 존속기한) ① <u>제12조의2, 제13조의4 및 제52</u>
---	---

<u>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,</u> <u>제8조제3항·제4항 및 제13조</u> <u>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</u> <u>그 효력을 가진다.</u>	<u>조제1항은 2028년 11월 23일까</u> <u>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u> <u>② 제8조제3항·제4항 및 제13</u> <u>조의3은 2030년 11월 23일까지</u> <u>그 효력을 가진다.</u>
제49조(벌칙) ① (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 1.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<u>대규모</u> <u>점포등을</u> 개설하거나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<u>대규모점포등의</u> 개설등록을 한 자 2.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<u>대규모점</u> <u>포등개설자의</u> 업무를 수행하 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<u>대규모점포등개</u> <u>설자의</u>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③·④ (생략)	제49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<u>대규</u> <u>모점포를</u> ----- ----- <u>대규모점포의</u> ----- -- 2. ----- ----- <u>대규모점</u> <u>포개설자의</u> ----- ----- ----- <u>대규모점포개설자의</u> ----- -----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52조(과태료) ①·② (생략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제52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

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<u>대규모점포등의</u>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.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<u>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</u>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의2. ~ 6. (생략) ④ (생략)	----- -----. 1. ----- -<u>대규모점포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 2. ----- --<u>대규모점포개설자의</u>----- ----- 2의2. ~ 6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